

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, 사전투표소 주변 카메라 설치하고

불특정 유권자 촬영한 불상의 인원 ...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

- 대전시 서구 갈마동 관내 사전투표 인근 불상의 인원 5~6명 카메라 3대 설치하고 유권자 무단촬영
- 유권자 항의에 따라 언쟁 발생 ... 관내 경력 투입해 불상의 카메라 설치자 해산
- 무단촬영으로 선거인의 투표의사, 투표행위에 심각한 위축 초래 ... 향후 동일 사례 고발엄벌

□ 더불어민주당 진짜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30일 “대전시당은 사전투표소 인근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표소 출입 유권자를 촬영한 불상의 인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한다” 고 밝혔다.

선거에 참여하려는 불특정 유권자를 임의로 불법 촬영하는 방법 등 투표를 방해함으로써 동법 237조(선거의 자유방해죄)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

□ 법률지원단은 이날 대전시 서구 갈마동 갈마아파트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불상의 인원 5~6명이 카메라 3대를 거치해 투표소 출입 시민들을 집계하거나 임의로 촬영했다고 밝혔다. 불상의 인원은 “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인원수 전산조작 검증하라! 자유시민들은 사전투표 인원수를 직접 계수하라!” 는 문구가 적힌 피켓 또한 게시했다.

특히 해당 상황과 관련해 불상의 카메라 설치자와 유권자간 언쟁 또한 발생했다.

소란 등에 따라 관내 경력이 출동해 불상의 카메라 설치자를 해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.

□ 법률지원단은 카메라 설치 등 이 같은 행위를 투표방해죄에 해당하는 등 선량한 유권자의 선거 자유를 방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.

□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“불특정인 다수가 촬영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소 근처에서 선거인을 무단촬영했다”면서 “선거인의 투표의사, 투표행위에 심각한 위축을 초래해 선거의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”고 역설했다.

□ 박 단장은 이어 “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소중한 수단이다”며 “부정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엄히 처벌해야한다”고 부연했다. <끝>